|  |  |  |
| --- | --- | --- |
| **1.2.4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2007년 3월 2일 세관총서 령 제159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를 규범화하고 인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이하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로 약칭)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이 밀수 범죄를 수사하고 공안기관이 치안관리 처벌안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공안기관의 행정안건 처리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 공개, 적시 및 국민의 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 또는 다민족 공동 거주지역에서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할 때에 반드시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조사 및 조회를 진행해야 한다.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에 정통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역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세관은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 상업기밀, 세관 업무기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6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처리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건 이송서신을 제작하여 적시에 안건을 유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세관이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세관 업무 인원(이하 “안건 처리인원”으로 약칭)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유관 인원에게 법률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안건 처리인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건 처리업무를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안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9조** 안건 처리인원의 회피는 소속된 직속 세관 또는 그 산하 소속세관의 관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안건 처리인원이 회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이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나 회피신청이 없고 당사자 및 그 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의 회피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세관 관장이 업무회피를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안건 처리인원의 회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안건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회피 신청에 대하여 세관은 3일 업무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관이 회피신청을 기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서면 통지를 수취한 날로부터 3일 업무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내린 세관에 1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을 내린 세관은 3일 업무일 이내에 재심사를 진행하여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안건 처리인원은 세관이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안건의 처리를 중단하지 않는다. 회피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안건 처리인원이 진행한 안건과 관련된 활동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피 결정을 내린 세관이 안건 현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 화학 실험인, 감정인 및 통역인원의 회피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증거 종류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서면 증거  (2) 물적 증거  (3)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4) 증인의 증언  (5) 화학실험 보고서 및 감정 결론  (6) 당사자의 진술  (7) 조사확인 및 검사 기록  증거는 조사 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어야만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15조** 세관이 수집한 물적 증거 및 서면 증거는 반드시 원물 및 원본이어야 한다. 원물 및 원본을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 및 복제 방식으로 원물 및 원본 내용 또는 외형 사진, 촬영, 복제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지정 또는 위탁한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원물 및 원본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다.  물적/서면 증거의 원물 및 원본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목록을 기재하고 수집 일시를 명시하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확인한 후에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면 증거 원본의 복제본, 영인본 또는 초록문서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출처와 수집 일시를 명시하고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적 증거 원물의 사진 또는 비디오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작과정 및 원물 보관처에 대한 문자 설명을 첨부한 후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문자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인원이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이 전자데이터 또는 녹음 및 촬영된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원시 판본을 수집해야 한다. 원시 판본을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본을 수집하고 제작방법, 제작시간, 제작자, 증명대상 및 원시 판본의 보관처 등을 명시하고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세관은 수집한 전자 데이터 또는 녹음 및 촬영 등 시청각 자료의 복제본에 대하여 증거 전환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 데이터를 종이재질의 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출력해야 한다. 녹음자료는 오디오 내용이 첨부된 문자로 기록해야 하고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이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7조** 위법행위가 2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정한 기간은 위법행위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위법행위가 연속적 또는 지속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제18조** 기간은 시, 일, 월, 년으로 계산한다. 기간이 시작되는 시간과 일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간 만료 최종 1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법정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1일 업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간에는 운송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정 기한 만료 이전에 우편으로 송달한 것은 기한 경과로 보지 않는다.  **제19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장애를 제거한 후 10일 내에 세관에 기한 순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세관이 결정한다.  **제20조** 세관이 행정법률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신인이 일반 국민이고 해당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성년 가족에게 전달하고 수령했음을 서명 받는다. 수신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법정대표,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및 조직의 문서 수취 책임자가 수령했음에 서명해야 한다. 수신인이 송달 접수를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 수령하였음에 대하여 서명 받을 수 있다.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경우에는 수신인이 송달 증명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령 서명한 일시를 명시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류의 수령 서명 일시가 송달 일시이다.  **제21조** 수신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년 가족이 행정법률문서의 수령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송달자가 증인에게 현장에 출두하도록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증명문서에 수령을 거절하는 이유, 일시를 명시하며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행정법률문서를 수신인의 주소지에 남겨두는 것을 송달로 간주한다.  **제22조**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세관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기타 세관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세관에 위탁문서를 발급하고 위탁을 받은 세관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송달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송달 증명서류에 명시된 문서수령 일시가 송달시기가 된다. 송달 증명서류가 다시 반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영수증 또는 조회회답문서에 명시된 문서 수령시기가 송달 시기이다.  **제23조**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행정법률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20조에서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신인이 송달을 위탁하여 접수할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관은 대리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고 또한 수신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또는 송달을 접수할 권리가 있는 분지기구 및 업무대리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다. 세관이 수권 위탁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수귄위탁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어렵고 수신인의 소재국 법률이 우편 송달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세관이 중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에 법률문건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대한 법률문서 송달과 관련한 유관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4조** 수신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소재부대 연대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하여 전달한다.  수신인이 감금 또는 노동교화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재 감옥, 노동개조단위 또는 노동교화단위를 통하여 전달한다.  수신인이 송달 증명문서에 수령하였음을 서명한 일시가 송달 일시이다.  **제25조** 본 규정 제20조에서 제24조가 정한 송달방식을 채택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을 공고한다.  법에 의거하여 송달을 공고하는 경우, 세관이 행정법률문서의 정본을 세관 공고란에 부착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를 송달 공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문에도 공고 기재를 해야 한다.  송달 공고는 공고 발행일로부터 60일이 만료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하여 송달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특별 송달방식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법정 근거가 있는 경우, 국민 개인에 대하여 50위안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장 제1절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장 안건 조사**  **제1절 입 안**  **제27조** 세관이 국민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안 조사를 해야 한다.  **제28조** 세관이 수리하거나 발견한 위법행위 단서가 확인대조를 거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안하지 않는다.  (1)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  (2) 위법행위가 법률이 정한 처벌시효를 초과한 경우  (3) 기타 법에 의거하여 입안할 수 없는 상황  세관이 입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안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서를 제작하여 적시에 신고자, 단서 이송기관 또는 주동적으로 자수한 위법행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조사 및 조회**  **제29조** 안건 처리인원은 위법행위 용의자 조사 및 증인 조회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위증을 하는 경우 지어야 하는 법률책임에 대하여 공지해야 한다.  위법행위 용의자 및 증인은 사실과 다름없이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안건 처리인원이 위법행위 용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단위 또는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세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안건 처리인원이 증인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재 단위 또는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세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조사 및 조회는 반드시 조사 및 조회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조사 및 조회기록에 명시되는 모든 항목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조사 및 조회 시작 및 종료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이 조사 및 조회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조사 및 조회 기록은 현장에서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에게 제공하여 사실을 대조 확인하거나 이를 낭독해야 한다. 피조사인과 피조회인은 오류가 없음을 대조 확인한 후에 조사 및 조회기록의 매 페이지마다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해야 한다.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인원이 조사 및 조회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이 정정 또는 보충하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또한 정정 또는 보충된 곳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32조** 청각 장애자 및 언어 장애자를 조사 및 조회하는 경우에는 청각 및 언어장애 수화에 통달한 인원을 통역인원으로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기록에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의 청각 및 언어 장애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 언어문자에 정통하지 않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조사 및 조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피조사인과 피조회인이 중국 언어문자에 정통하여 통역인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성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조사 및 조회기록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통역인원의 성명, 근무처 및 직업은 조사 및 조회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통역인원은 조사 및 조회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33조** 세관이 최초로 위법행위 용의자를 조사하고 증인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용의자 및 증인의 성명, 출생 일시, 호적 소재지, 현재 주소, 신분증 종류 및 번호, 근무처, 문화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의 유무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처벌 등을 받은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질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주요 구성원 등에 대한 상황을 분명하게 질의해야 한다.  위법행위 용의자 또는 증인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 및 조회를 진행할 때 반드시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현장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거나 통지 후에 현장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건에 기록해야 한다.  **제34조**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이 서면 진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건 처리인원이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이 스스로 서면 진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진술자료에 서명하고 진술을 작성한 시간, 장소 및 진술인을 명시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서면 진술을 수취한 후 수취 시간을 명시하고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35조** 조사 및 조회를 진행할 때 문자기록을 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녹음 및 녹화할 수 있다.  **제36조** 안건 처리인원은 위법행위 용의자 및 증인의 진술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폭력, 위협, 유도, 기만 및 기타 불법수단을 사용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  **제3절 검사 및 검사확인**  **제37조** 안건 처리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운송 수단과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및 물품을 검사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확인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검사 및 검사확인 기록에는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인원이 검사 및 검사확인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8조** 법에 의거하여 밀수혐의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은폐된 장소 또는 비검사인원 시선 밖에서 피검사인원과 동일한 성별의 2명 이상 안건 처리인원이 집행해야 한다.  밀수 혐의자의 신체를 조사하는 경우 의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구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절 화학실험 및 감정**  **제39조** 안건 조사과정에서 유관 화물 및 물품에 대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화학실험과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또는 세관이 위탁한 화학실험 및 감정기구가 샘플을 채취한다.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두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이 증인을 요청하여 현장에 출두하게 해야 한다.  채취한 샘플은 밀봉을 하여 확인하고 샘플 채취 기록을 작성한 후 안건 처리인원 또는 세관이 위탁한 화학 및 감정기구 인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세관이 채취한 샘플은 반드시 적시에 화학실험 및 감정기구에 송달하여 화학실험과 감정을 해야 한다.  **제40조** 법에 의거하여 우선 매각하여 환금화하거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 우선적으로 유관 화물 및 물품을 통과시키는 경우, 세관은 반드시 1식 2부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샘플 수량 및 매 샘플의 수량은 샘플의 품질 특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제한한다.  **제41조** 화학실험 및 감정은 세관 화학실험 감정기구 또는 국가가 인정한 기타 위탁 기구가 진행한다. 유관 화물 및 물품을 소지한 자 또는 소유자는 화학실험 및 감정 요구에 따라 화학실험 및 감정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2조** 화학실험인원과 감정인원은 화학실험과 감정을 진행한 후에 화학실험 보고서 및 감정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화학실험 보고서와 감정결론에는 반드시 위탁인과 위탁 화학실험 및 감정 사항, 화학실험 및 감정부문에 제출한 관련 자료, 화학실험 및 감정 근거 및 사용된 과학기술 수단, 화학실험 및 감정부문과 화학실험 및 감정인원의 자격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하며, 또한 화학실험 및 감정인원의 서명 및 화학실험 및 감정부문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감정결론은 분석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43조** 당사자가 화학실험 보고 및 감정결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 화학실험 및 감정을 1회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이 심사를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화학실험 및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화학 실험 및 감정비용은 세관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 신청으로 세관이 화학실험과 감정을 다시 진행하고 이에 따라 화학실험 및 감정결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실험 및 감정비용을 세관이 부담한다. 화학실험 및 감정결론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학실험 및 감정비용을 화학실험 및 감정을 다시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5절 예금 및 송금 조회**  **제44조** 밀수 안건을 조사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 단위 및 용의자의 금융기구 및 우체기업 예금 및 송금을 조회하며,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이 비준해야 한다.  **제45조** 안건 조사인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 단위 및 용의자의 금융기구 및 우정기업 예금과 송금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법률 집행 신분을 밝히고 세관의 조회 협조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6절 압류 및 담보**  **제46조** 세관이 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증빙 등의 자료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하고 압류 증빙을 제작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현장에서 압류조치를 채택한 이유, 근거 및 법에 의거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압류 증빙에는 압류되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재산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중량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한 완벽하게 외재적 특징을 묘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보관자는 압류 증빙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압류 증빙에 이를 명시하고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증빙 등 자료를 압류하는 경우 세관 봉쇄표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세관이 봉쇄 표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자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47조** 세관이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증빙 등 자료를 압류하는 기한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안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의 비준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심의 및 소송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8조** 인민법원 판결 또는 세관의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압류된 위험물품 또는 신선하고 부패, 부식, 효력상실, 변질이 쉬워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화물, 물품 및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환금화를 신청하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법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매각 및 환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세관은 매각을 통한 환금화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환금화할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각을 통한 환금화를 하기 전에 적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환금화한 이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관련 장부, 증빙 등 자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서를 제작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자는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0조**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압류할 수 없거나 압류가 어려워 당사자 또는 운송 수단 책임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출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담보를 수취한 증빙을 제작하여 당사자 또는 운송 수단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운송 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담보를 수취한 증빙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담보를 수취한 후에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에 대하여 사진 촬영 또는 녹화 등을 통해 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  **제51조** 세관이 법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하는 통지서를 제작하여 당사자 또는 운송 수단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운송 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과 보관자는 담보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당사자, 운송 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담보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2조** 법에 따라 밀수 범죄 혐의 용의자에 대하여 인신 구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인신구류 시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7절 조사 중지 및 종결**  **제53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고 입안과정에서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에 이송해야 한다.  행정처벌 안건은 세관이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한 날부터 조사를 중지한다.  **제54조** 세관이 조사를 중지한 행정처벌 안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1)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처리를 완료한 세관 이송 안건인 동시에 세관이 행정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수리를 하지 않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세관이 처리하도록 반환한 경우  **제55조** 조사를 진행 한 후 행정처벌 안건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법률수단이 완벽하며 처벌을 확정할 근거가 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2)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  (3) 당사자인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  (4) 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없으며 기타 관계인이 추적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처리결정을 내린 세관 이송 안건이고 세관이 행정처벌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  (6) 기타 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제4장 행정처벌 결정**  **제1절 안건 심사**  **제56조** 세관은 이미 조사를 종결한 행정처벌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안건 철회, 행정처벌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제57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건 위법사실의 정확성 여부, 안건 확정 근거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지의 여부, 조사 및 증거 채취 절차의 합법성 및 적절성 여부, 행정처벌을 하지 않거나 경감 또는 가중 처벌 현황내역을 심사하고 적용법률과 안건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안건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사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전달하여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제58조** 만 14세 이하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단, 그 감독보호자에게 명령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완화하거나 경감한다.  **제59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단, 그 후견인에게 명령하여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치료하도록 한다. 간헐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을 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2절 고지, 재심사 및 청문**  **제60조** 세관은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결정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해야 하며, 또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관련업무 종사의 임시 중지, 세관 등록등기 말소, 일반 자연인에 대한 1만 위안 이상의 벌금 처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 처벌, 유관 화물, 물품, 밀수한 운송 수단 몰수 등의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청문을 개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세관이 행정처벌고지서를 제작 및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1조** 불가항력 또는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행정처벌고지서를 수령한 후 3일 업무일 이내에 서면진술, 해명 및 청문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진술, 해명 및 청문요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현장에서 구두로 진술 및 해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서면기록을 제작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진술, 해명 및 청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세관은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진술, 해명 및 청문권리를 포기한 것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62조** 세관은 당사자의 서면진술과 해명의견을 수령한 후에 재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에 세관은 이를 받아 들어야 한다.  **제63조** 세관은 당사자의 해명을 이유로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 단, 세관이 발견한 새로운 위법사실은 제외한다.  **제64조** 재심사를 진행한 후에 기존의 처벌을 변경하여 사실, 이유, 근거, 처벌 정도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의 행정처벌고지서를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60조에서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당사자가 청문회 개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행정처벌 청문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처리결정**  **제66조** 세관 관장은 행정처벌 안건 심사에 대한 상이한 결과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다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위법행위가 확실하게 존재하여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막, 위협과 부정적 결과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2)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3) 본 규정 제55조 제(2) ~ (4) 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철회한다.  (4)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제(3), (4), (5) 항에서 정한 징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징수한다.  (5) 위법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세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의 명백성, 안건 확정 증거의 확실 및 정확성, 위법행위의 확정, 적용법률의 정확성, 안건처리절차의 합법성, 처벌 정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제67조** 사건의 내막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엄중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안건 심리위원회가 집단 토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68조** 세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하거나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벌결정서 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서를 제작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69조** 행정처벌결정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기본현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 세관 등록번호, 통관인원 세관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 종류 및 근거  (4) 행정처벌 이행방식 및 기한  (5) 행정처벌에 불복하여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와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세관의 명칭과 처벌결정 일시. 또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세관의 인감을 날인한다.  **제70조**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1)당사자의 기본 현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 세관 등록번호, 통관인원 세관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사실 및 증거  (3)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  (4)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5)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세관의 명칭 및 결정 일시. 또한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세관의 인감을 날인한다.  **제71조** 행정처벌결정서는 선고를 한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세관은 7일 이내에 행정처벌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72조**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규정에 따라 관련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 수단, 특수제작 설비를 몰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징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밀수 위법사실이 기본적으로 명백하나 당사자를 분명하게 찾을 수 없는 안건인 경우, 세관은 몰수목록을 제작하여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몰수공고를 제작하여 발송해야 한다. 공고기한은 3개월 이며 관련 당사자가 공고 기한 내에 지정된 세관에 가서 유관 세관 수속을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 공고 기간 만료 이후에도 당사자가 세관에 와서 세관 유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이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 징수목록에는 징수하는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 수단, 특수제작 설비의 명칭,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관련 화물, 물품, 밀수 운송 수단, 특수제작 설비의 중요하고 뚜렷한 특징 또는 결점을 징수목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74조** 안건 처리인원, 피징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징수목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피징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피징수인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증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징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이 징수목록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 및 발행된 징수목록은 반드시 공고 송달해야 한다.  **제5장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  **제75조** 세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세관이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내린 관련관업무 종사 임시 중단, 등록등기 말소 등의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하는 절차는 세관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76조** 당사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실하게 존재하여 세관에 기한 연기 또는 벌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세관은 당사자의 기한 연장 신청, 분할 집행 신청을 수령한 후 10일 업무일 이내에 연장 및 벌금의 분할 납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지서를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세관이 당사자의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벌금 징수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제77조** 당사자의 기한 연장 또는 벌금의 분할 납부에 동의하는 경우, 집행 완료 기한은 처벌결정서에서 정한 이행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8조**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 벌금금액의 3%를 벌금에 더하여 처벌한다.  (2)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당사자가 세관의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은 경우, 세관은 압류된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환금화하여 징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를 징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79조** 세관은 본 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벌금 및 징수공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통지서를 제작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80조** 세관처벌을 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가 출국 전에 벌금, 위법소득 및 법에 따라 징수되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 수단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 완료하지 않고 세관에 상술한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출국을 제지하는 협조문건을 제작하고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제지할 수 있다.  출국을 제지하는 협조문건에는 행정처벌결정서 등의 관련 행정법률문건이 첨부되어야 하며 출국을 제지 당하는 사람의 성명, 성별, 출생 일시, 출입국 증서 및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출국을 제지 당하는 사람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 당사자 또는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가 벌금, 위법소득 및 법에 따라 징수되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 완료하거나 세관에 상술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즉시 출국 제지를 해제하는 협조문서를 제작하여 출국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82조**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를 사용하여 공제 또는 당사자로부터 압류한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법에 따라 환금화하여 벌금에서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적시에 반환하거나 압류 및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83조** 세관이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관에서 유관 화물, 물품,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반환수속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유관 화물, 물품,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 및 환금화할 수 있으며 환금화된 금액을 보관한다. 환금화된 금액으로 세관이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계산된 창고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당사자는 세관이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세관이 해당 잔여금액을 국고에 상납한다.  **제84조** 세관이 담보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관에서 재산 및 권리 증빙의 반환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관련 재산 및 권리 증빙 등의 환금화 가격을 환산하거나 지불하여 국고에 상납한다.  **제85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반드시 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인민법원이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명시하는 기한 내에 제소해야 한다.  (1) 행정처벌결정서 송달 이후 당사자가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2) 재심사 결정서 송달 이후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 결정시 송달일로부터 15일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3) 제1심 행정판결 이후에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5일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4) 제1심 행정판정 이후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5) 제2심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87조**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후 회사 분리, 합병 또는 기타 자산 구조조정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위법소득 몰수 또는 법에 따른 밀수 화물, 물품, 운송 수단과 동일한 금액을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및 조직이 피집행인이 된다.  **제88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1) 처벌결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집행중지를 판정하는 경우  (3) 행정 재심사기관 및 인민법원이 집행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법에 의거하여 집행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전항 제(1)항의 상황으로 인해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의 비준을 취득해야 한다.  집행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다시 집행해야 한다.  **제89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  (1) 집행의 근거가 된 법률문서가 철회되는 경우  (2) 당사자인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  (3) 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해 종지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자가 없으며 공급하여 집행할 기타 재산이 없는 경우.  (4) 세관의 행정처벌 결정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경과하였으며 세관이 법에 따라 각종 집행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단,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5)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집행 중지를 판정한 후 2년을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집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6)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집행 종결을 판정한 경우  (7) 기타 법에 의거하여 집행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  **제8장 간단한 안건의 처리 절차**  **제90조** 세관은 우송, 속달우편, 화물보관, 보세 감독관리 등 업무현장 및 기타 세관의 감독관리업무 중 위법사실이 확실하나 위법 사실이 미미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한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본 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절차는 제외한다.  **제91조** 간단한 안건의 처리 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은 세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직접 행정처벌고지서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령하였음을 서명 받을 수 있다.  **제92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관은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당사자가 현장에서 진술, 해명 또는 청문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2) 당사자가 현장에서 진술 및 해명을 진행하고 세관이 현장에서 재확인을 한 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재확인 의견을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가 현장에서 진술, 해명 및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현장에서 진술 및 해명을 진행하고 재확인 의견을 접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상황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93조** 간단한 안건의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반드시 일반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세관이 당사자가 제시한 진술 및 해명의견에 대하여 현장에서 재확인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세관이 현장에서 재확인을 한 후 당사자가 세관의 재확인 의견에 불복하는 경우  (3) 당사자가 현장에서 법에 따라 세관에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4) 세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장 부 칙**  **제94조** 안건 처리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타인 재물을 요구하여 얻어내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5조** 세관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96조** 본 규정의 해석책임은 세관총서에 있다.  **제97조**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办理行政处罚案件程序规定**  2007年3月2日海关总署令第159号  发布  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218号修改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程序，保护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以下简称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以及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的程序适用本规定。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办理治安管理处罚案件的程序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公安机关办理行政案件程序规定》执行。  **第三条**　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应当遵循公正、公开、及时和便民的原则。  **第四条**　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在少数民族聚居或者多民族共同居住的地区，应当使用当地通用的语言进行查问和询问。  对不通晓当地通用语言文字的当事人，应当为其提供翻译人员。  **第五条**　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过程中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海关工作秘密或者个人隐私的，应当保守秘密。  **第二章　一般规定**  **第六条**　海关发现的依法应当由其他行政机关或者刑事侦查部门处理的违法行为，应当制作案件移送函，及时将案件移送有关行政机关或者刑事侦查部门处理。  **第七条**　海关在调查、收集证据时，办理行政处罚案件的海关工作人员（以下简称办案人员）不得少于2人，并且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执法证件。  **第八条**　办案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当事人及其代理人有权申请其回避：  　　（一）是本案的当事人或者当事人的近亲属；  　　（二）本人或者其近亲属与本案有利害关系；  （三）与本案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案件公正处理的。  **第九条**　办案人员的回避，由其所属的直属海关或者隶属海关关长决定。  **第十条**　办案人员要求回避的，应当提出书面申请，并且说明理由。  办案人员具有应当回避的情形之一，没有申请回避，当事人及其代理人也没有申请他们回避的，有权决定他们回避的海关关长可以指令他们回避。  当事人及其代理人要求办案人员回避的，应当提出申请，并且说明理由。口头提出申请的，海关应当记录在案。  **第十一条**　对当事人及其代理人提出的回避申请，海关应当在3个工作日内作出决定并且书面通知申请人。  对海关驳回回避申请有异议的，当事人及其代理人可以在收到书面通知后的3个工作日内向作出决定的海关申请复核1次；作出决定的海关应当在3个工作日内作出复核决定并且书面通知申请人。  **第十二条**　在海关作出回避决定前，办案人员不停止办理行政处罚案件。在回避决定作出以前，办案人员进行的与案件有关的活动是否有效，由作出回避决定的海关根据案件情况决定。  **第十三条**　化验人、鉴定人和翻译人员的回避，适用本规定第八条至第十二条的规定。  **第十四条**　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的证据种类主要有：  （一）书证；  （二）物证；  （三）视听资料、电子数据；  （四）证人证言；  （五）化验报告、鉴定结论；  （六）当事人的陈述；  （七）查验、检查记录。  证据应当经查证属实，才能作为认定事实的根据。  **第十五条**　海关收集的物证、书证应当是原物、原件。收集原物、原件确有困难的，可以拍摄、复制足以反映原物、原件内容或者外形的照片、录像、复制件，并且可以指定或者委托有关单位或者个人对原物、原件予以妥善保管。  收集物证、书证的原物、原件的，应当开列清单，注明收集的日期，由有关单位或者个人确认后盖章或者签字。  收集由有关单位或者个人保管书证原件的复制件、影印件或者抄录件的，应当注明出处和收集时间，经提供单位或者个人核对无异后盖章或者签字。  收集由有关单位或者个人保管物证原物的照片、录像的，应当附有关制作过程及原物存放处的文字说明，并且由提供单位或者个人在文字说明上盖章或者签字。  提供单位或者个人拒绝盖章或者签字的，办案人员应当注明。  **第十六条**　海关收集电子数据或者录音、录像等视听资料，应当收集原始载体。收集原始载体确有困难的，可以收集复制件，注明制作方法、制作时间、制作人、证明对象以及原始载体存放处等，并且由有关单位或者个人确认后盖章或者签字。  海关对收集的电子数据或者录音、录像等视听资料的复制件应当进行证据转换，电子数据能转换为纸质资料的应当及时打印，录音资料应当附有声音内容的文字记录，并且由有关单位或者个人确认后盖章或者签字。  **第十七条**　违法行为在2年内未被发现的，不再给予行政处罚。法律另有规定的除外。  前款规定的期限，从违法行为发生之日起计算；违法行为有连续或者继续状态的，从行为终了之日起计算。  **第十八条**　期间以时、日、月、年计算。期间开始的时和日，不计算在期间内。期间届满的最后一日是法定节假日或者法定休息日的，以其后的第一个工作日为期间届满日期。  期间不包括在途时间，法定期满前交付邮寄的，不视为逾期。  **第十九条**　当事人因不可抗拒的事由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期限的，在障碍消除后的10日内可以向海关申请顺延期限，是否准许，由海关决定。  **第二十条**　海关送达行政法律文书，应当直接送交受送达人。受送达人是公民的，本人不在交其同住成年家属签收；受送达人是法人或者其他组织的，应当由法人的法定代表人、其他组织的主要负责人或者该法人、组织负责收件的人签收；受送达人有委托接受送达的代理人的，可以送交代理人签收。  直接送达行政法律文书，由受送达人在送达回证上签字或者盖章，并且注明签收日期。送达回证上的签收日期为送达日期。  **第二十一条**　受送达人或者与其同住的成年家属拒绝签收行政法律文书，送达人应当邀请见证人到场，说明情况，在送达回证上注明拒收事由和日期，由送达人、见证人签字或者盖章，把行政法律文书留在受送达人的住所，即视为送达。  **第二十二条**　直接送达行政法律文书有困难的，可以委托其他海关代为送达，或者邮寄送达。  委托其他海关代为送达的，应当向受托海关出具委托手续，并且由受托海关向当事人出示。  邮寄送达的，应当附有送达回证并且以送达回证上注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送达回证没有寄回的，以挂号信回执或者查询复单上注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  **第二十三条**　海关对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有住所的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或者组织送达行政法律文书，适用本规定第二十条至第二十二条规定。  海关对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或者组织能够直接送交行政法律文书的，应当直接送达。受送达人有委托接受送达的代理人的，海关可以向代理人直接送达，也可以向受送达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立的代表机构或者有权接受送达的分支机构、业务代办人直接送达。海关对授权委托有疑问的，可以要求代理人提供经过公证机关公证的授权委托书。  直接送达行政法律文书有困难并且受送达人所在国的法律允许邮寄送达的，可以邮寄送达。  海关向我国香港、澳门和台湾地区送达法律文书的，比照对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或者组织送达法律文书的相关规定执行。  **第二十四条**　受送达人是军人的，通过其所在部队团以上单位的政治机关转交。  受送达人是被监禁的或者被劳动教养的，通过其所在监所、劳动改造单位或者劳动教养单位转交。  受送达人在送达回证上的签收日期，为送达日期。  **第二十五条**　经采取本规定第二十条至第二十四条规定的送达方式无法送达的，公告送达。  依法予以公告送达的，海关应当将行政法律文书的正本张贴在海关公告栏内。行政处罚决定书公告送达的，还应当在报纸上刊登公告。  公告送达，自发出公告之日起满60日，视为送达；对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当事人进行公告送达，自发出公告之日起满6个月，视为送达。  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以及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中约定有特别送达方式的除外。  **第二十六条**　违法事实确凿并且有法定依据，对公民处以50元以下、对法人或者其他组织处以1000元以下罚款或者警告的行政处罚的，可以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第五章第一节的有关规定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  **第三章　案件调查**  **第一节　立　案**  **第二十七条**　海关发现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有依法应当由海关给予行政处罚的行为的，应当立案调查。  **第二十八条**　海关受理或者发现的违法线索，经核实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立案：  （一）没有违法事实的；  （二）违法行为超过法律规定的处罚时效的；  （三）其他依法不予立案的情形。  海关决定不予立案的，应当制作不予立案通知书，及时通知举报人、线索移送机关或者主动投案的违法嫌疑人。  **第二节　查问、询问**  **第二十九条**　办案人员查问违法嫌疑人、询问证人应当个别进行，并且告知其依法享有的权利和作伪证应当承担的法律责任。  　 违法嫌疑人、证人应当如实陈述、提供证据。  **第三十条**　办案人员查问违法嫌疑人，可以到其所在单位或者住所进行，也可以要求其到海关或者指定的地点进行。  　 办案人员询问证人，可以到其所在单位或者住所进行。必要时，也可以通知证人到海关或者指定地点进行。  **第三十一条**　查问、询问应当制作查问、询问笔录。  　 查问、询问笔录上所列项目，应当按照规定填写齐全，并且注明查问、询问开始和结束的时间；办案人员应当在查问、询问笔录上签字。  查问、询问笔录应当当场交给被查问人、被询问人核对或者向其宣读。被查问人、被询问人核对无误后，应当在查问、询问笔录上逐页签字或者捺指印，拒绝签字或者捺指印的，办案人员应当在查问、询问笔录上注明。如记录有误或者遗漏，应当允许被查问人、被询问人更正或者补充，并且在更正或者补充处签字或者捺指印。  **第三十二条**　查问、询问聋、哑人时，应当有通晓聋、哑手语的人作为翻译人员参加，并且在笔录上注明被查问人、被询问人的聋、哑情况。  查问、询问不通晓中国语言文字的外国人、无国籍人，应当为其提供翻译人员；被查问人、被询问人通晓中国语言文字不需要提供翻译人员的，应当出具书面声明，办案人员应当在查问、询问笔录中注明。  　 翻译人员的姓名、工作单位和职业应当在查问、询问笔录中注明。翻译人员应当在查问、询问笔录上签字。  **第三十三条**　海关首次查问违法嫌疑人、询问证人时，应当问明违法嫌疑人、证人的姓名、出生日期、户籍所在地、现住址、身份证件种类及号码、工作单位、文化程度，是否曾受过刑事处罚或者被行政机关给予行政处罚等情况；必要时，还应当问明家庭主要成员等情况。  　 违法嫌疑人或者证人不满18周岁的，查问、询问时应当通知其父母或者其他监护人到场。确实无法通知或者通知后未到场的，应当记录在案。  **第三十四条**　被查问人、被询问人要求自行提供书面陈述材料的，应当准许；必要时，办案人员也可以要求被查问人、被询问人自行书写陈述。  被查问人、被询问人自行提供书面陈述材料的，应当在陈述材料上签字并且注明书写陈述的时间、地点和陈述人等。办案人员收到书面陈述后，应当注明收到时间并且签字确认。  **第三十五条**　查问、询问时，在文字记录的同时，可以根据需要录音、录像。  **第三十六条**　办案人员对违法嫌疑人、证人的陈述应当认真听取，并且如实记录。  　 办案人员不得以暴力、威胁、引诱、欺骗以及其他非法手段获取陈述。  **第三节　检查、查验**  **第三十七条**　办案人员依法检查运输工具和场所，查验货物、物品，应当制作检查、查验记录。检查、查验记录由办案人员、当事人或者其代理人签字或者盖章；当事人或者其代理人不在场或者拒绝签字或者盖章的，办案人员应当在检查、查验记录上注明，并且由见证人签字或者盖章。  **第三十八条**　办案人员依法检查走私嫌疑人的身体，应当在隐蔽的场所或者非检查人员视线之外，由2名以上与被检查人同性别的办案人员执行。  检查走私嫌疑人身体可以由医生协助进行，必要时可前往医疗机构作专业检查。  **第四节　化验、鉴定**  **第三十九条**　在案件调查过程中，需要对有关货物、物品进行取样化验、鉴定的，由海关或者海关委托的化验、鉴定机构提取样品。提取样品时，当事人或者其代理人应当到场；当事人或者其代理人未到场的，海关应当邀请见证人到场。  提取的样品应当予以加封确认，并且填制提取样品记录，由办案人员或者海关委托的化验、鉴定机构人员、当事人或者其代理人、见证人签字或者盖章。  海关提取的样品应当及时送化验、鉴定机构化验、鉴定。  **第四十条**　依法先行变卖或者经海关许可先行放行有关货物、物品的，海关应当提取1式2份以上样品；样品份数及每份样品数量以能够认定样品的品质特征为限。  **第四十一条**　化验、鉴定应当交由海关化验鉴定机构或者委托国家认可的其他机构进行。有关货物、物品持有人或者所有人应当根据化验、鉴定要求提供化验、鉴定所需的有关资料。  **第四十二条**　化验人、鉴定人进行化验、鉴定后，应当出具化验报告、鉴定结论。  化验报告、鉴定结论应当载明委托人和委托化验、鉴定的事项，向化验、鉴定部门提交的相关材料，化验、鉴定的依据和使用的科学技术手段，化验、鉴定部门和化验、鉴定人资格的说明，并且应当有化验、鉴定人的签字和化验、鉴定部门的盖章。通过分析获得的鉴定结论，应当说明分析过程。  **第四十三条**　当事人对化验报告、鉴定结论有异议的，可以申请重新化验、鉴定1次；海关经审查确有正当理由的，应当重新进行化验、鉴定。  化验、鉴定费用由海关承担。但是经当事人申请海关重新化验、鉴定的，如果化验、鉴定结论有改变的，化验、鉴定费用由海关承担；如果化验、鉴定结论没有改变的，化验、鉴定费用由重新化验、鉴定申请人承担。  **第五节　查询存款、汇款**  **第四十四条**　在调查走私案件时，办案人员查询案件涉嫌单位和涉嫌人员在金融机构、邮政企业的存款、汇款，需要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  **第四十五条**　办案人员查询案件涉嫌单位和涉嫌人员在金融机构、邮政企业的存款、汇款，应当表明执法身份，出示海关协助查询通知书。  **第六节　扣留和担保**  **第四十六条**　海关依法扣留货物、物品、运输工具、其他财产及账册、单据等资料，应当出示执法证件，制作扣留凭单送达当事人，当场告知其采取扣留的理由、依据及其依法享有的权利。  扣留凭单应当记载被扣货物、物品、运输工具或者其他财产的品名、规格、数量、重量等，品名、规格、数量、重量当场无法确定的，应当尽可能完整地描述其外在特征。扣留凭单应当由办案人员、当事人或者其代理人、保管人签字或者盖章；当事人或者其代理人不在场或者拒绝签字或者盖章的，办案人员应当在扣留凭单上注明，并且由见证人签字或者盖章。  海关依法扣留货物、物品、运输工具、其他财产及账册、单据等资料，可以加施海关封志。加施海关封志的，当事人或者其代理人、保管人应当妥善保管。  **第四十七条**　海关扣留货物、物品、运输工具、其他财产以及账册、单据等资料的期限不得超过1年。因案件调查需要，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延长，延长期限不得超过1年。但是复议、诉讼期间不计算在内。  **第四十八条**　在人民法院判决或者海关行政处罚决定作出之前，对扣留的危险品或者鲜活、易腐、易烂、易失效、易变质等不宜长期保存的货物、物品以及所有人申请先行变卖的货物、物品、运输工具，需要依法先行变卖的，应当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  海关在变卖前，应当通知先行变卖的货物、物品、运输工具的所有人。如果变卖前无法及时通知的，海关应当在货物、物品、运输工具变卖后，通知其所有人。  **第四十九条**　海关依法解除对货物、物品、运输工具、其他财产及有关账册、单据等资料的扣留，应当制发解除扣留通知书送达当事人。解除扣留通知书由办案人员、当事人或者其代理人、保管人签字或者盖章；当事人或者其代理人不在场，或者当事人、代理人拒绝签字或者盖章的，办案人员应当在解除扣留通知书上注明，并且由见证人签字或者盖章。  **第五十条**　有违法嫌疑的货物、物品、运输工具无法或者不便扣留的，当事人或者运输工具负责人向海关提供担保时，办案人员应当制作收取担保凭单送达当事人或者运输工具负责人，收取担保凭单由办案人员、当事人、运输工具负责人或者其代理人签字或者盖章。  　 收取担保以后，可以对涉案货物、物品、运输工具进行拍照或者录像存档。  **第五十一条**　海关依法解除担保的，应当制发解除担保通知书送达当事人或者运输工具负责人。解除担保通知书由办案人员及当事人、运输工具负责人或者其代理人、保管人签字或者盖章；当事人、运输工具负责人或者其代理人不在场或者拒绝签字或者盖章的，办案人员应当在解除担保通知书上注明，并且由见证人签字或者盖章。  **第五十二条**　依法对走私犯罪嫌疑人实施人身扣留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人身扣留规定》的程序办理。    **第七节　调查中止和终结**  **第五十三条**　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在立案后发现当事人的违法行为应当移送其他行政机关或者刑事侦查部门办理的，应当及时移送。  行政处罚案件自海关移送其他行政机关或者刑事侦查部门之日起中止调查。  **第五十四条**　海关中止调查的行政处罚案件，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恢复调查：  （一）其他行政机关或者刑事侦查部门已经作出处理的海关移送案件，仍需要海关作出行政处罚的；  （二）其他行政机关或者刑事侦查部门不予受理或者不予追究刑事责任，退回海关处理的。  **第五十五条**　经调查后，行政处罚案件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终结调查：  （一）违法事实清楚、法律手续完备、据以定性处罚的证据充分的；  （二）没有违法事实的；  （三）作为当事人的自然人死亡的；  （四）作为当事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无法人或者其他组织承受其权利义务，又无其他关系人可以追查的；  （五）其他行政机关或者刑事侦查部门已作出处理的海关移送案件，不需要海关作出行政处罚的；  （六）其他依法应当终结调查的情形。    **第四章　行政处罚的决定**  **第一节　案件审查**  **第五十六条**　海关对已经调查终结的行政处罚案件，应当经过审查；未经审查程序，不得作出撤销案件、不予行政处罚、予以行政处罚等处理决定。  **第五十七条**　海关对行政处罚案件进行审查时，应当审查案件的违法事实是否清楚，定案的证据是否客观、充分，调查取证的程序是否合法、适当，以及是否存在不予行政处罚或者减轻、从轻、从重处罚的情节，并且提出适用法律和案件处理意见。  　 有关案件违法事实不清、证据不充分或者调查程序违法的，应当退回补充调查。  **第五十八条**　不满14周岁的人有违法行为的，不予行政处罚，但是应当责令其监护人加以管教。已满14周岁不满18周岁的人有违法行为的，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  **第五十九条**　精神病人在不能辨认或者不能控制自己行为时有违法行为的，不予行政处罚，但应当责令其监管人严加看管和治疗。间歇性精神病人在精神正常时有违法行为的，应当给予行政处罚。    **第二节　告知、复核和听证**  **第六十条**　海关在作出行政处罚决定前，应当告知当事人作出行政处罚决定的事实、理由和依据，并且告知当事人依法享有的权利。  作出暂停从事有关业务、撤销海关注册登记、对公民处1万元以上罚款、对法人或者其他组织处10万元以上罚款、没收有关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等行政处罚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  　 在履行告知义务时，海关应当制发行政处罚告知单，送达当事人。  **第六十一条**　除因不可抗力或者海关认可的其他正当理由外，当事人应当在收到行政处罚告知单的3个工作日内提出书面陈述、申辩和听证申请。逾期视为放弃陈述、申辩和要求听证的权利。  　 当事人当场口头提出陈述、申辩的，海关应当制作书面记录，并且由当事人签字或者盖章确认。  　 当事人放弃陈述、申辩和听证权利的，海关可以直接作出行政处罚决定。当事人放弃陈述、申辩和听证权利应当有书面记载，并且由当事人或者其代理人签字或者盖章确认。  **第六十二条**　海关在收到当事人的书面陈述、申辩意见以后，应当进行复核；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成立的，海关应当采纳。  **第六十三条**　海关不得因当事人的申辩而加重处罚，但是海关发现新的违法事实的除外。  **第六十四条**　经复核后，变更原处罚告知事实、理由、依据、处罚幅度的，应当重新制发海关行政处罚告知单，并且依据本规定第六十条至第六十三条的规定办理。  **第六十五条**　当事人申请举行听证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听证办法》规定办理。  **第三节　处理决定**  **第六十六条**　海关关长应当根据对行政处罚案件审查的不同结果，依法作出以下决定：  （一）确有违法行为，应当给予行政处罚的，根据其情节和危害后果的轻重，作出行政处罚决定；  （二）依法不予行政处罚的，作出不予行政处罚决定；  （三）有本规定第五十五条第（二）至（四）项情形之一的，撤销案件；  （四）符合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第六十二条第（三）、（四）、（五）项规定的收缴条件的，予以收缴；  （五）违法行为涉嫌犯罪的，移送刑事侦查部门依法办理。  海关作出行政处罚决定，应当做到认定违法事实清楚，定案证据确凿充分，违法行为定性准确，适用法律正确，办案程序合法，处罚幅度合理适当。  **第六十七条**　对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应当由海关案件审理委员会集体讨论决定。  **第六十八条**　海关依法作出行政处罚决定或者不予行政处罚决定的，应当制发行政处罚决定书或者不予行政处罚决定书。  **第六十九条**　行政处罚决定书应当载明以下内容：  （一）当事人的基本情况，包括当事人姓名或者名称、海关注册编码、报关员海关注册编码、地址等；  （二）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规章的事实和证据；  （三）行政处罚的种类和依据；  （四）行政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五）不服行政处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六）作出行政处罚决定的海关名称和作出决定的日期，并且加盖作出行政处罚决定海关的印章。  **第七十条**　不予行政处罚决定书应当载明以下内容：  （一）当事人的基本情况，包括当事人姓名或者名称、海关注册编码、报关员海关注册编码、地址等；  （二）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规章的事实和证据；  （三）不予行政处罚的依据；  （四）不服不予行政处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五）作出不予行政处罚决定的海关名称和作出决定的日期，并且加盖作出不予行政处罚决定海关的印章。  **第七十一条**　行政处罚决定书应当在宣告后当场交付当事人；当事人不在场的，海关应当在7日内将行政处罚决定书送达当事人。  **第七十二条**　根据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第六十二条的规定收缴有关货物、物品、违法所得、运输工具、特制设备的，应当制作收缴清单送达被收缴人。  走私违法事实基本清楚，但是当事人无法查清的案件，海关在制发收缴清单之前，应当制发收缴公告，公告期限为3个月，并且限令有关当事人在公告期限内到指定海关办理相关海关手续。公告期满后仍然没有当事人到海关办理相关海关手续的，海关可以根据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第六十二条第一款第（四）项的规定予以收缴。  **第七十三条**　收缴清单应当载明予以收缴的货物、物品、违法所得、运输工具、特制设备的名称、规格、数量或者重量等。有关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特制设备有重要、明显特征或者瑕疵的，办案人员应当在收缴清单中予以注明。  **第七十四条**　收缴清单由办案人员、被收缴人或者其代理人签字或者盖章。  被收缴人或者其代理人拒绝签字或者盖章，或者被收缴人无法查清但是有见证人在场的，应当由见证人签字或者盖章。  没有被收缴人签字或者盖章的，办案人员应当在收缴清单上注明原因。  根据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第六十二条第一款第（四）项的规定而制发的收缴清单应当公告送达。  **第五章　行政处罚决定的执行**  **第七十五条**　海关作出行政处罚决定后，当事人应当在行政处罚决定书规定的期限内，予以履行。  　 海关对当事人依法作出暂停从事有关业务、撤销其注册登记等行政处罚决定的执行程序，由海关总署另行制定。  **第七十六条**　当事人确有经济困难向海关提出延期或者分期缴纳罚款的，应当以书面方式提出申请。  　 海关收到当事人申请延期、分期执行申请以后，应当在10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延期、分期缴纳罚款的决定，并且制发通知书送达申请人。  　 海关同意当事人延期或者分期缴纳的，应当及时通知收缴罚款的机构。  **第七十七条**　同意当事人延期或者分期缴纳罚款的，执行完毕的期限自处罚决定书规定的履行期限届满之日起不得超过180日。  **第七十八条**　当事人逾期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海关可以采取下列措施：  　　（一）到期当事人不缴纳罚款的，每日按照罚款数额的3%加处罚款；  　　（二）当事人逾期不履行海关的处罚决定又不申请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海关可以将扣留的货物、物品、运输工具变价抵缴，或者以当事人提供的担保抵缴，也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七十九条**　海关依照本规定第七十八条规定采取加处罚款、抵缴措施之前，应当制发执行通知书并且送达当事人。  **第八十条**　受海关处罚的当事人或者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在出境前未缴清罚款、违法所得和依法追缴的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的，也未向海关提供相当于上述款项担保的，海关可以制作阻止出境协助函，通知出境管理机关阻止其出境。  阻止出境协助函应当随附行政处罚决定书等相关行政法律文书，并且载明被阻止出境人员的姓名、性别、出生日期、出入境证件种类和号码。被阻止出境人员是外国人、无国籍人员的，应当注明其英文姓名。  **第八十一条**　当事人或者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缴清罚款、违法所得和依法追缴的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等值价款的，或者向海关提供相当于上述款项担保的，海关应当及时制作解除阻止出境协助函通知出境管理机关。  **第八十二条**　将当事人的担保抵缴或者将当事人被扣留的货物、物品、运输工具依法变价抵缴罚款之后仍然有剩余的，应当及时发还或者解除扣留、解除担保。  **第八十三条**　自海关送达解除扣留通知书之日起3个月内，当事人无正当理由未到海关办理有关货物、物品、运输工具或者其他财产的退还手续的，海关可以将有关货物、物品、运输工具或者其他财产提取变卖，并且保留变卖价款。变卖价款在扣除自海关送达解除扣留通知书之日起算的仓储等相关费用后，尚有余款的，当事人在海关送达解除扣留通知书之日起1年内应当前来海关办理相关手续，逾期海关将余款上缴国库。  **第八十四条**　自海关送达解除担保通知书之日起1年内，当事人无正当理由未到海关办理财产、权利凭证退还手续的，由海关将相关财产、权利凭证等变卖折价或者兑付，并且上缴国库。  **第八十五条**　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的，海关应当填写申请执行书，并且提供人民法院要求提供的其他材料。  **第八十六条**　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应当符合《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的规定并且在下列期限内提起：  （一）行政处罚决定书送达后当事人未申请行政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在处罚决定书送达之日起3个月后起算的180日内；  （二）复议决定书送达后当事人未提起行政诉讼的，在复议决定书送达之日起15日后起算的180日内；  （三）第一审行政判决后当事人未提出上诉的，在判决书送达之日起15日后起算的180日内；  （四）第一审行政裁定后当事人未提出上诉的，在裁定书送达之日起10日后起算的180日内；  （五）第二审行政判决书送达之日起180日内。  **第八十七条**　当事人实施违反《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的行为后，发生企业分立、合并或者其他资产重组等情形，对当事人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或者依法追缴走私货物、物品、运输工具等值价款的，应当将承受当事人权利义务的法人、组织作为被执行人。  **第八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中止执行：  （一）处罚决定可能存在违法或者不当情况的；  （二）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人民法院裁定中止执行的；  （三）行政复议机关、人民法院认为需要中止执行的；  （四）其他依法应当中止执行的。  根据前款第（一）项情形中止执行的，应当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  中止执行的情形消失后，应当恢复执行。  **第八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终结执行：  （一）据以执行的法律文书被撤销的；  （二）作为当事人的自然人死亡的；  （三）作为当事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被依法终止，又无权利义务承受人的，也无其他财产可供执行的；  （四）海关行政处罚决定履行期限届满超过2年，海关依法采取各种执行措施后仍无法执行完毕的，但是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情形除外；  （五）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的，人民法院裁定中止执行后超过2年仍无法执行完毕的；  （六）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后，人民法院裁定终结执行的；  （七）其他依法应当终结执行的。  **第六章　简单案件处理程序**  **第九十条**　海关对行邮、快件、货管、保税监管等业务现场及其他海关监管业务中违法事实清楚，违法情节轻微的案件，可以适用简单案件处理程序。但适用本规定第二十六条规定程序的除外。  **第九十一条**　适用简单案件处理程序的案件，海关进行现场调查后，可以直接制发行政处罚告知单，当场由当事人或者其代理人签收。  **第九十二条**　有以下所列情形之一的，海关可以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  （一）当事人当场放弃陈述、申辩或者听证权利的;  （二）当事人当场进行陈述、申辩，经海关当场复核后，当事人或者其代理人接受复核意见。  当事人当场放弃陈述、申辩、听证的权利，或者当场进行陈述、申辩以及是否接受复核意见的情况，应当有书面记载，由当事人签字或者盖章确认。  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的，应当制发行政处罚决定书，并且当场送达当事人。  **第九十三条**　适用简单案件处理程序过程中，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不得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应当按照一般程序规定办理：  （一）海关对当事人提出的陈述、申辩意见无法当场进行复核的；  （二）海关当场复核后，当事人对海关的复核意见仍然不服的；  （三）当事人当场依法向海关要求听证的；  （四）海关认为需要进一步调查取证的。  **第七章　附　则**  **第九十四条**　办案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索取或者收受他人财物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九十五条**　海关对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或者组织给予行政处罚的，适用本规定。  **第九十六条**　本规定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九十七条**　本规定自2007年7月1日起施行。 |